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2885

제출일자 : 2026. 9. 28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이 폐지(1995. 12. 29. 공포, 1996. 6. 30. 시행)되어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, 관련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행 「농어촌정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, 「농어촌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6. 8. 20. ~ 2026. 9. 9.)결과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 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조례전문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법 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0. 11. 10, 2018. 7. 20.)

제2조(사업의 범위)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구획정리사업(경지정리)

2.환지처분 업무

3.농지의 교환 분합

4.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위원회 설치) ①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가 자문에 의하고 몽리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 마다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(이하 위원회 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과 위원(기본구성 인원수는 30인으로 하되 몽리자 수가 30인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)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에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(개정 2000. 11. 10)

④전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중에서 위촉되는 위원(이하 지구위원 이라 한다)의 수는 재적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몽리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(자연 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능함)를 군수가 위촉한다.(개정 2000. 11. 10, 2018. 7. 20.)

제5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

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

2.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

3.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(개정 2000. 11. 10)

4.몽리자 부담금(노력, 현물 등 포함)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5.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몽리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.

③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당해지구 사업이 완료(환지처분 포함)될 때 까지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회일 3일전에 일시,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10조(회의록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이상이

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업비의 부과 등) ①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. (개정 2000. 11. 10)

②제1항의 경비 부과 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, 기채원금 및 이자 사무비 그 밖에 이 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경비 총액에서 보조금 (현물포함) 및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③경비부과 기준은 토지(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환지 교부 대상지) 지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후에 환지교부 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.(개정 2000. 11. 10)

④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⑤부담금의 체납처분, 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12조(토지의 가격평정) 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.

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 차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③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(개정 2000. 11. 10)

제13조(일시 이용지의 지정) ①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서에서 정산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

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, 지상권, 임차권 또는 사용 대체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히 군수가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일시이용지지정도면은 사업 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손실보상금의 징부교부)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.

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,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15조(환지교부) ①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
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, 관개용 배수로, 구거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.

제16조(환지 청산)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.

제17조(환지청산금의 취급) ①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

소속 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.

②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(청산금의 공탁)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관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(권리 변동 등의 신고의무) ①법 제9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 및 지적(가옥, 기타 공작물 포함)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.(개정 2000. 11. 10)

1.법 제44조제7항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(개정 2000. 11. 10, 2018. 7. 20.)

2.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

3.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, 이전,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

4.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

5.토지 소유자(공작물 소유자 포함)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

6.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,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 [시행 1996. 6. 30.] [법률 제5077호, 1995. 12. 29., 타법폐지] 농촌근대화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법률 제5077호, 1995. 12. 29.> (농지개량조합법)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률의 폐지)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. <단서 생략>
제3조 (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.
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.
제4조 생략
제5조 (기반정비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기반정비사업 및 기반시설로 본다.
제6조 (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.
제7조 (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

□ 「농어촌정비법」

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제9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,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.\
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저수지의 개수·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) 시행계획을 공고하고,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

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3. 3. 28.>
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,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3. 3. 28.>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3. 23.>

제10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)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"한국농어촌공사"라 한다)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11.>